



제236회 임시회
'05. 2.23(수) 13:30

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관광건설위원회
전문위원

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5년 2월 2일
- 회부일자 : 2005년 2월 2일

3. 제안이유

-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
- 현행제도하에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추진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동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국토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법 제3조에 명시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(제2조)
-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추진 운영과 관련 추진기구, 개최방법, 주민의견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(제3조 내지 제5조)
-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설치·운영 필요한 사항 신설(제8조 내지 제13조, 제16조 내지 제20조)
- 분과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업무추진에 도모 (제14조)
- 건축물의 높이, 배치, 형태, 색채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(제14조)
-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근거 마련(제21조 내지 제24조)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(2004.1.1)에 따라 법률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이며
-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한 공청회 추진 기구를 운영토록 하는 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담하여도 그 기능과 역할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제21조 내지 제24조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와 관련, 기 도시 계획위원회, 분과위원회, 공동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별도의 상임기획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.